

## 【 8 】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6. 4.

제 출 자 : 양 주 시 장

### □ 제안이유

- 2006.1.1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제정·시행으로 종전에 임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「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의 설치가 의무화되고, 심의 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,
- 새로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「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」에서 대행도록 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#### ○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(안 제5조)

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기금운용심의 위원회」를 설치하고,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「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 위원회」에서 대행도록 함.

##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양주시지방채조기상환등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의 제명 중 “양주시지방채조기상환등운용조례”를 “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지방재정법 제42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2조”로, “동법 제40조”를 “법 제50조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 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 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③ 심의위원회는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양주시지방채조기상환등운용조례</u>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(생 략)     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<u>지방재정법 제42조</u>의 규정에 의한 세입·세출예산상의 잉여금 중 <u>동법 제40조</u>의 규정에 의한 아월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(순세계 잉여금)의 20 내지 30퍼센트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</p> <p><u>제5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</u></p> <p>① <u>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총칙, 자금운용 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하며 기금운용 총칙에는 기금의 조성규모 및 연차별 적립계획,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종괄적 규정을 두고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.</u></p>	<p><u>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</u>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② ----- 「<u>지방재정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2조-----      ----- 법 제50조 -----      -----      -----      -----      -----.</p> <p><u>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)</u></p> <p>① <u>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1. <u>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2. <u>기금운용의 성과분석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3. <u>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</u></p> <p>③ <u>심의위원회는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.</u></p>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【 지방자치법 】 - 2005. 8. 4 전부개정, 2006. 1. 1 시행

- 제133조 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,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제1항에서 "재산"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다 말한다.

### 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】 - 2006. 1. 1 시행

- 제13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1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 2.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 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】 - 2006. 1. 1 시행

- 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【 지방재정법 】 - 2005. 8. 4 전부개정, 2006. 1. 1 시행

제50조 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·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
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 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
3. 공익·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
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제52조 (결산상 잉여금의 처리)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·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.

1.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
2.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